

2026년 제1차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생산등록번호	춘천산학경영지원부-1822	주임	팀장	춘천산학경영지원부장	산학협력부 단장	산학협력단 장
등록일		조은아	이윤심	김진종	김현욱	2026.05.11. 이동하
결재일		협조자				
공개구분	공개					

차 수	2026년 제1차	참석인원	15명
일시	2026. 5. 6.(수) 13:30~14:30	참석자	위원장(산학협력단장), 기획혁신처장, 사무국장 직무대리, 춘천기획연구처장, 산학협력부단장, 기술혁신부단장, 강릉기획연구처장, 강릉산학협력단장, 삼척기획연구처장, 삼척산학협력단장, 원주기획연구처장, 원주산학협력단장, 최미정 위원, 박성훈 위원, 김주영 위원
장소	(춘천) 대학본부 303호 (강릉) 산학협력관 401호 (삼척) 그린에너지관 608호 (원주) 산학1호관(W8) 207호 ※ 대면-비대면 동시진행		
배석자	(춘천) 인사팀장, 총무팀장, 재무회계팀장, 조은아 주임 (강릉) 강릉산학경영지원부장, 재무구매팀장, 총무인사팀장, 김민기 주무관 (삼척) 삼척산학협력지원부장, 행정지원팀장, 석진길 책임 (원주) 한초아 팀장	불참자	교육혁신처장, 정성훈 위원, 홍은미 위원, 윤경수 위원
안건	<input type="checkbox"/> 심의 안건 1.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사업단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2.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센터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3.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인사관리 지침 제정(안) 4. 2025회계연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결산안 5. 2025회계연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결산(안)		

발 언 요 지
<input type="checkbox"/> 개회선언(위원장) ○ 2026년 제1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개회 선언(13:30)

□ 성원보고(총무팀장)

- 위원 19명 중 15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심의 안건

<안건 1>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사업단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인사팀장 : 제1호 의안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사업단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에 대하여 설명
- 사무국장 : 부칙 제4조에 강릉, 원주캠퍼스 사업단에 대한 귀속지원금 지급 무대리 : 원을 2031년까지로 설정한 기준이 있는지?
- 인사팀장 : 간접비 관리 지침 개정 당시 최소 5년간 유지하고, 해당 기간 내 설득 및 이해 도출 과정을 거치는 것을 전제로 설정하였음
- 기획혁신처장 : 5년이란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고 생각함. 기간을 단축하되, 부칙을 통해 진행 중 어려움 발생 시 기간을 연장하는건 어떤지?
- 위원장 : 강릉, 원주캠퍼스는 의견이 있는지?
- 강릉산학협력단장 : 통합 과정에서 산학협력단 산하 사업단 의견 수렴 결과 5년으로 제시된 것임. 타 부서에서는 유예기간 1~3년 사례가 많으나, 모든 부서가 동일 기간에 맞출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합리적인 의견 제시 시 기간 조정 가능함
- 위원장 : 사업단의 통상적인 사업기간이 5년인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기간은 5년으로 유지하되, 정리 완료 시 특례기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하는건 어떤지?
- 기술혁신부단장 : 안건이 일부개정지침이지만 통합이후,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 설립된 사업단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건지?
- 위원장 : 통합 이후 신설된 사업단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며,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산학협력부단장 : 제4조의 “이 지침 시행 이전에”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신규사업단은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게 어떤지?
- 위원장 : 신규 사업단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되, 통합 이전에 설립된 사업단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적용기한은 별도 수정없이 기존 안대로 진행하는 내용으로 수정 후 가결

〈안건 2〉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센터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인 사 팀 장 : 제2호 의안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센터 운영 지침 일부 개정지침(안)’ 에 대하여 설명
- 기술혁신부단장: 운영위원회 심의 후 지침이 적용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 인 사 팀 장 : 통상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진행하는 경우 약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 기술혁신부단장: 이전 안건과 동일하게 특례 적용 시점을 지침 시행전이 아닌, 통합 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해야하는게 아닌지? 또한, 지침 시행 이전에 신규로 설치된 센터에 대한 적용 여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례 적용 대상이 강릉, 원주 캠퍼스로 한정될 경우 춘천, 삼척 캠퍼스에서도 추가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 위 원 장 : 강릉, 원주캠퍼스는 의견이 있는지?
- 강릉, 원주
산학협력단장 : 별도 의견 없음
- 위 원 장 : 시행 시기 수정하여 가결

〈안건 3〉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인사관리 지침 제정(안)

- 인 사 팀 장 : 제3호 의안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인사관리 지침 제정(안)’ 에 대하여 설명
- 위 원 장 : 인사 채용 및 관리는 각 캠퍼스에서 별도로 담당하되, 지침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됨. 각 캠퍼스 간 내용 합의가 된건지?
- 인 사 팀 장 : 합의 하였음
- 기획혁신처장 : 제7조(증명)에서 경력증명서의 경우 통합 전 이력과 통합 후 이력을 나눠서 기재하는지?
- 인 사 팀 장 :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은 없음
- 기획혁신처장 : 경력 산정에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으며, 향후 근로자별 상황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요구사항에도 각 캠퍼스별로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음
- 인 사 팀 장 : 각 캠퍼스별 담당자와 의논하겠음

- 위 원 장 : 지침 상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으며, 경력 산정 방식 및 인정 범위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증명서 관련 서식이 부칙에 포함되어 있는지?
- 인 사 팀 장 : 강릉, 원주캠퍼스의 경우 연구통합관리시스템이 아직 도입 전이라 서식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 삼척기획연구처장: 제4조(복무)3항에 타 대학 강의는 주당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과제의 경우 해당 강의 수행이 필요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연구책임자 승인 시 6시간 초과 가능 여부도 불명확함. 또한 현행 문구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향후 관련 상황 발생 시 규정 적용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 인 사 팀 장 : 해당 조항은 대학의 「연구원 임용 및 운영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함
- 기획혁신처장 : 복무는 일부 악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명확하게 규정해야함. 현행 기준은 유지하되, 기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함
- 인 사 팀 장 :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은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이며, 연구책임자 입장에서는 연구원이 주당 6시간 이상의 강의를 수행할 경우 연구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정 수준의 제한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강릉산학협력단 장 : 일정 기준은 필요한 것으로 동의함. 연구원 채용 시 연구 수행 목적이 명확해야 하나, 과제 성격에 따라 강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바, 강의 시간을 주당 2~3시간 이내로 제한하되 예외적인 사항은 협의를 통해 인정하는 조건부 운영 방안 제안
- 기술혁신부단장: 주당 6시간 제한은 기본 원칙으로 유지하되, 산단장의 허가 시 초과를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 제안
- 위 원 장 : 강의 시간 제한 및 초과 시 별도 논의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자는 의견은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현 회의에서 구체적인 기준까지 확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해당 사항은 각 캠퍼스별 추가 논의를 거쳐 수정 후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
- 삼척기획연구처장: 제6조(계약의 해지)의 2항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구원은 자동 면직되며,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해 삼척캠퍼스에서 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음. 과제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면직 절차 없이 계약기간만 만료될 경우, 계약 갱신기대권 문제로 인해 자동 면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인사팀장 : 기본적으로 2년 계약이고, 이후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별도 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게 오히려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 위원장 : 계약 연장 여부는 산학협력단이 아닌 연구책임자의 결정사항인 만큼, 산학협력단에서 일률적으로 고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삼척기획연구처장 : 하지만 계약의 주체는 산학협력단임
- 위원장 : 제6조3항에 연구책임자 요청 시 계약 해지 30일 전에 연구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계약만료의 경우 연구원과 연구책임자 간 협의 사항으로, 산단의 사전 안내가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계약이 자동 종료되도록 두는 것이 바람직함
- 기획혁신처장 : 사전 안내 누락 시 근로자가 계약 갱신기대권을 근거로 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은 사측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임. 아울러 제6조1항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기한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연구원의 즉시 사직 의사 표시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위원장 : 사직 사유가 다양한 만큼 제출 기한을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사용자 측과 달리 근로자의 경우 사직 통보에 별도의 기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기술혁신부단장 : 근로형태에 따라 기한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음
- 인사팀장 :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상 퇴직 30일 전 사전 통보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제지할 수 없는 실정
- 기획혁신처장 : 인사 관련 사항은 일부 사례에서 절차상 미비를 문제로 사용자 측에 손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는 만큼,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위 원 장 : 해당 사항은 위원회 의결만으로 즉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노무사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내용 수정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정

<안건 4> 2025회계연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결산안

- 재무회계팀장 : 제4호 의안 ‘2025회계연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 위 원 장 : 재정 규모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으나, 확대 규모 대비 간접비 수익의 증가폭은 크지 않음. 반면 재정지업사업 등 사업규모는 상당한 수준으로 수행하였음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제4호 의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하도록 하겠음
- 전 체 위 원 : 동의함
- 위 원 장 : 제4호 의안 원안 통과

<안건 5> 2025회계연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결산(안)

- 강릉캠퍼스 재무구매팀장: 제5호 의안 ‘2025회계연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 위 원 장 : 25년도의 경우 통합 이전으로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로 나뉘어 결산이 진행됨. 아울러 내년에는 통합으로 결산이 진행될 예정이며, 산학협력단 법인이 2026년 3월 24일자로 통합됨에 따라, 해당 일자 기준으로 강릉원주대 산학협력단 결산이 구분 진행될 예정으로 이 점 양해 요청
- 기획혁신처장 : 26년도 통합 결산 전에 두 대학의 결산방법이나 계정과목 사용, 집행 기준 등의 정합성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를 걸쳐야 26년도 결산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준비 필요
- 위 원 장 : 안그래도 회계법인을 통해 두 대학의 회계 처리 방식, 기준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임. 통합 결산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음.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제5호 의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하도록 하겠음
- 전 체 위 원 : 동의함
- 위 원 장 : 제5호 의안 원안 통과